

접 수	의안과 - (20 :)
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예체능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함에 따라 발생
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

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
같이 제출합니다.

- 붙 임 1. 청원소개건의서 3부
2. 청 원 서 3부. 끝.

2011년 8월 4일

청 원 인

성 명 : 대표발의자-김채림 / 공동발의자-이성덕, 신선우, 송가을해, 민덕해,
김채은, 최현정, 이슬이, 윤지수, 홍석현(교육상임위원회)

주 소 : 충남 천안시 청당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104동 905호

전화번호 : 041)574-6224 (휴대전화 : 010-6535-6224)

소 개 의 원 : _____ (인) 외 _____ 인

						의 장
담당자	청원담당	과 장	국 장	차 장	총 장	

청원소개의견서

청원인	주소 : 충남 천안시 청당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104동 905호					
	성명 : 김채림					
건명	예체능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					
소개년월일	2011년 8월 4일					
<p>소개의견</p> <p>청원인 김채림 외 9명은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교육위원회입니다. 본 위원회가 2011년 8월 제 9회 청소년정기의회에서 발의한 안건 중 의결된 안건 중 하나가 ‘『예체능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』에 관한 청원’ 이었습니다.</p> <p>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『현재 교육개정안에 ‘체육교과 4학기 이상, 그 외 예체능 과목(음악, 미술 등) 3학기 이상을 필수 이수한다.’ ‘학교는 음악 교과와 미술 교과 모두 3학기 이상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하며, 학생들은 원하는 경우에 따라 두 교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.’ 라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』는 것입니다.</p> <p>청소년 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2009 교육개정안, 다.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의 중점, (1) 공통 지침 (가)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(가)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(군) 180단위,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나누어 편성하되 체육교과는 4학기 이상, 그 외 예체능 과목(음악/미술 등)은 3학기 이상으로 필수 이수한다.</p> <p>2009 교육개정안, 다.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의 중점, (1) 공통 지침에 아래항목을 추가한다.</p> <p>(타) 학교는 음악 교과와 미술 교과 모두 3학기 이상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하며, 학생들은 원하는 경우에 따라 두 교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.</p> <p>신구문대조표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현행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개정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(1) 공통 지침 (가)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(군) 180단위,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나누어 편성한다. 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(1) 공통 지침 (가)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(군) 180단위,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나누어 편성하되 체육교과는 4학기 이상, 그 외 예체능 과목(음악/미술 등)은 3학기 이상으로 필수 이수한다. (타) 학교는 음악 교과와 미술 교과 모두 3학기 이상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하며, 학생들은 원하는 경우에 따라 두 교과 중 하나를 편성하여 이수할 수 있다.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현행	개정문	(1) 공통 지침 (가)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(군) 180단위,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나누어 편성한다.	(1) 공통 지침 (가)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(군) 180단위,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나누어 편성하되 체육교과는 4학기 이상, 그 외 예체능 과목(음악/미술 등)은 3학기 이상으로 필수 이수한다. (타) 학교는 음악 교과와 미술 교과 모두 3학기 이상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하며, 학생들은 원하는 경우에 따라 두 교과 중 하나를 편성하여 이수할 수 있다.
현행	개정문					
(1) 공통 지침 (가)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(군) 180단위,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나누어 편성한다.	(1) 공통 지침 (가)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(군) 180단위,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나누어 편성하되 체육교과는 4학기 이상, 그 외 예체능 과목(음악/미술 등)은 3학기 이상으로 필수 이수한다. (타) 학교는 음악 교과와 미술 교과 모두 3학기 이상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하며, 학생들은 원하는 경우에 따라 두 교과 중 하나를 편성하여 이수할 수 있다.					
<p>위와 같은 내용에 찬성하면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안한 청원을 소개합니다.</p>						

소 개 의 원

인

청원서

1. 제안이유

2009 교육 개정안으로 인해 전 학년에 걸쳐 이수하던 과목을 학년별로 집중해 이수하거나 1년 동안 이수하는 과목을 한 학기동안 집중하여 이수하고, 주당 수업 시간이 1~2시간정도인 예체능 과목 등을 특정 학기에만 몰아서 교육하게 되었다. 이 제도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고 한 과목만을 집중적으로 이수해 다양한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국영수 위주의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중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. 물론, 사회과목이나 과학과목은 한 학기에 집중적으로 이수함에 따라 이른바 ‘수박 겉핥기’식의 학습을 피할 수 있고, 과목 수가 줄어들어 따라 시험 준비가 수월해지는 등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, 지속적으로 배워야 할 예체능 과목의 경우, 수업시간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체력증진, 창의성 증진을 억압하고 경험의 질과 학습 성과를 저하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.

2. 주요골자

□ 2009 교육개정안, 다.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의 중점, (1) 공통 지침 (가)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(가)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(군) 180단위,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나누어 편성하되 체육교과는 4학기 이상, 그 외 예체능 과목(음악/미술 등)은 3학기 이상으로 필수 이수한다.

□ 2009 교육개정안, 다.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·운영의 중점, (1) 공통 지침에 아래항목을 추가한다.

(타) 학교는 음악 교과와 미술 교과 모두 3학기 이상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하며, 학생들은 원하는 경우에 따라 두 교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.

□ 신구문대조표

현행	개정문
<p>(1) 공통 지침</p> <p>(가)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(군) 180단위,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나누어 편성한다.</p>	<p>(1) 공통 지침</p> <p>(가)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(군) 180단위,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나누어 편성하되 체육교과는 4학기 이상, 그 외 예체능 과목(음악/미술 등)은 3학기 이상으로 필수 이수한다.</p> <p>(타) 학교는 음악 교과와 미술 교과 모두 3학기 이상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하며, 학생들은 원하는 경우에 따라 두 교과 중 하나를 편성하여 이수할 수 있다.</p>

청원인 성명 : 김채림(대표 발의자), 이성덕, 신선우, 홍석현, 민덕혜, 송가을해, 김채은, 윤지수, 이슬이, 최현정

청원인 주소 : 충남 천안시 청당동 벽산 블루밍 아파트 104동 905호

청원인 전화번호 : 010-3801-6224

【별첨 1】

청원인 서명날인부

연 번	성 명	주 소	날 인	비 고

【별첨 2】

소개의원 서명날인부

연 번	의 원 명	날 인	소 속 정 당	소속위원회	선 거 구	비 고

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

1.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, 청원소개의견서, 청원서 각각 3부씩(이중 2부는 사본)이며,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.

2. 청원제출용지

- ① 「제목」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.
- ② 「청원인 주소, 전화번호, 성명」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「성명」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. 「날인」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.

[예] 성명 : ○○주식회사
.....
대표이사 홍길동 (인) 외 24인(법인)

-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.
-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3. 청원소개의견서

-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.
- ② 「소개의견」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.
-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.

4. 청원서

-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, 전화,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,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, 취지,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.
-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.
-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(A4)규격(가로210mm, 세로297mm)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.